

수원고등법원 2022. 10. 21 선고 2020나2501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2. 10. 21 선고 2020나25013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1. 19 선고 2018가합615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앤에스 담당변호사 백수기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양사연, 신호준

변론 종결2022. 7. 15.

판결 선고2022. 10. 21.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1. 19. 선고 2018가합615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389,922,189원 한도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89,922,1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475,148,740원 한도1)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5,148,7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R'라는 상호로 화공약품 도소매업을 하던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합8738호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 13. 'C은 원고에 대하여 2013. 10. 31.을 기준으로 807,708,131원의 물품대금채무가 남아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C은 2017. 4. 25.경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채무 807,708,131원 중 302,699,062원을 변제하여, 원고는 C에 대하여 505,009,069원2)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7. 2. 3.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에 C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D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C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중인 2017. 4.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54,414,803원의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56,297,836원의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8,603,775원의 5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④ 근저당권자를 (주)H(이하 'H'라고만 한다), 채권최고액 98,665,464원의 6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고(이하 통칭할 경우에는 'F 등의 3~6순위 근저당권'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경우에는 '000의 0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는 2017. 8. 17. 취소되었다.

다. C은 2017. 9. 11.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8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7. 9. 1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F 등의 3~6순위 근저당권 외에 ① 근저당권자 (주)I(이하 'I은행'이라고만 한다),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피담보채무액 520,000,000원, 이하 'I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②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피담보채무액 150,000,000원, 이하 '피고의 2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I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F 등의 3~6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7. 9. 18.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0, 11호증, 을 제5 내지 9,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는 C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자력인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채무자인 C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데(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2017. 9. 11.) 무렵 ① 채무자 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7. 9. 11. 기준 감정평가액의 합계인 1,107,896,000원인 반면, ② 채무자 C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505,009,069원(이 사건 피보전채권), I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520,000,000원,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150,000,000원, 그 외 신용카드·신용대출채무 70,000,000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H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30,707,973원, E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채무 45,914,803원, G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채무 8,603,775원 등 합계 1,330,235,620원³⁾으로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56,297,836원인 F의 4순위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의 F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C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행위로 말미암아 공동담보에 부족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제1심 감정인 J의 감정결과는 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도 주장하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감정인의 감정방법에 현저한 오류나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설령 채무자인 C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무자력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는 800,000,000원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액 합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를 초과하는 887,981,878원(= I은행 채권 520,000,000원 + 피고 채권 150,000,000원 + E 채권 54,414,803원 + F 채권 56,297,836원 + G 채권 8,603,775원 + H 채권 98,665,464원)이어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룬다.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 J의 감정결과(2020. 1. 8.자)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 9. 11.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1,107,896,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액은 위 감정평가액 1,107,896,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800,000,000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는, C이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법원 증인 F의 진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는 'R'라는 상호로 화공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설립된 (주)R의 대표이사는 F이고, C은 (주)R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융통한 자금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변제자력을 얻어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였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선의 항변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같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였으므로, 자신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에게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12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800,000,000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당시 시가라고 할 수 있는 감정평가액인 1,107,896,000원의 72.2%에 불과할 정도로 현저히 염가인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 9. 11.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17. 9. 22.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11일에 불과하고, 매매목적물에 관한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매매대금의 잔금 지급은 동시에 이행으로 이루어지는 통상의 경우와는 다르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일 이전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지 불과 7일이 경과한 2017. 9. 18. 마쳐진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의 관여 없이 C과 피고 사이에 직접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2017년

8월경 취소되었는데, 채무자 C이 I은행 직원과 함께 피고를 찾아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설득하여서'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정상적인 거래관계여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가액배상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2017. 9.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I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 피고의 2순위 근저당권 및 F 등의 3~6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사해행위 후 위 각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의 방법은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 그런데 위 F 등의 3~6순위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서, ① 근저당권자 E에 대한 피담보채무 54,414,803원, ② 근저당권자 F에 대한 피담보채무 56,297,836원, ③ 근저당권자 G에 대한 피담보채무 8,603,775원, ④ 근저당권자 H에 대한 피담보채무 98,665,464원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 시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로서 위 각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갑 제2, 3호증, 을 제17호증의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안산시 단원구 K동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이 법원의 세무법인 S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주)T(이하 'T은행'이라고만 한다), I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2017. 9. 11.) F 등의 3~6순위 근저당권 중 5순위 근저당권자 G에 대한 피담보채무는 전부 인정되고, 3순위 근저당권자 E에 대한 피담보채무는 45,914,803원에 한하여, 6순위 근저당권자 H에 대한 피담보채무는 30,707,973원에 한하여 각 인정되며, 4순위 근저당권(근저당권자 F)의 피담보채무는 전액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F은 2006. 6. 12.부터 2007. 1. 1.까지 및 2008. 7. 1.부터 2017. 4. 1.까지, E은 1999. 5. 27.부터 2015. 12. 21.까지, G는 2013. 12. 10.부터 2017. 4. 1.까지 C이 운영하던 R에 각 근무하였다. F의 퇴직금 산정액은 31,366,156원이고, G의 퇴직금 산정액은 4,243,455원이다. H(H가 설립되기 전 H 대표이사 U의 개인사업체였던 H를 포함한다)는 2014. 1. 28.경부터 2017. 3. 31.경까지 C이 운영하던 R에 공급가액 합계 752,394,420원의 물품을 납품하였다.

② C의 아들 F이 2014. 1. 1.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 9. 11.까지 C으로부터 수령한 금액 중 2017. 4. 1. 이전에 수령한 급여, 상여금, 성과금 및 용도가 명확히 기재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합계 84,160,120원이고, 같은 기간 F이 C에게 지급한 금액은 26,926,018원으로서 그 차액은 57,234,102원5) 인바(별지 2 C과 F 사이의 입출금 내역), F은 2014. 1. 1.부터 2017. 9. 11.까지 C으로부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56,297,836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하였다. F이 C에 대하여 합계 56,297,836원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까지 C이 F에게 수십 차례 걸쳐 지급한 합계 57,234,102원으로 C의 F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던 것으로, C의 F에 대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반면 G에 대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는 C이 G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G에 대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8,603,775원은 전부 인정된다.

③ E은 C이 운영하는 R에 근무하는 동안 C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았는데, 2014. 1. 1.부터 2017. 9. 11.까지 C으로부터 급여, 상여금, 성과금으로 수령한 돈을 제외한 금액 합계 172,845,330원을 수령한 반면, 같은 기간 C에게 합계 152,540,000원을 지급한 사실(별지3 C과 E 사이의 입출금 내역), C은 2017. 4. 5. E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지급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4,414,803원의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C이 운영하는 R에 근무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C이 필요로 하는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는 과정에서 이자 명목 등으로 C으로부터 20,305,330원6) 을 더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E의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이 위 수령액만큼 변제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은 C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3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인 2017. 4. 17.부터 2017. 9. 11.까지 5차례에 걸쳐 미지급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8,5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E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채무 중 8,500,000원은 변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잔존하는 C의 E에 대한 미지급급여 또는 퇴직금채무액은 45,914,803원7) 이므로 E 명의의 위 3순위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액은 45,914,803원에 한하여 인정된다.

1	2017. 4. 17.	급여	2,000,000원
2	2017. 6. 01.	급여	2,000,000원
3	2017. 7. 14.	급여	2,000,000원
4	2017. 7. 31.	상여금	500,000원
5	2017. 9. 11.	급여	2,000,000원
합계	8,500,000원		

④ 피고는, H가 C이 운영하던 R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98,665,464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6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는 C이 부담하는 위 채무 중 37,756,752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7. 4. 30. C이 H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60,908,712원⁸⁾의 채무가 잔존하였고, 남은 금액 중 20,355,739원은 2017. 7. 13. 발행되고 2018. 2. 6. 만기되는 어음에 의하여, 9,845,000원은 2017. 8. 7. 발행되어 2018. 11. 20. 만기되는 어음에 의하여 각 변제되었다고 자인하는바⁹⁾,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 9. 11. 당시 잔존하는 채무는 30,707,973원¹⁰⁾이므로, H의 근저당권(6순위) 피담보채무액은 30,707,973원에 한하여 인정된다.

다. 소결론

제1심 법원 감정인 J의 감정결과(2020. 4. 14.자)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4. 3.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감정평가액)은 1,145,148,74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근저당권자 I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액이 52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의 2순위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액이 150,000,000원, 근저당권자 E의 3순위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액 45,914,803원, 근저당권자 G의 5순위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액 8,603,775원, 근저당권자 H의 6순위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액이 30,707,973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인 389,922,189원¹¹⁾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89,922,1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심연수

판사유현중

판사김무신

별지

제2항 기재 등에 비추어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 갈음한 가액배상을 구하면서 그 한도에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행한다.

2) 505,009,069원 = 807,708,131원 - 302,699,062원, 소장에는 '505,099,069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505,009,069원'의 계산상 오류 내지 오기로 보인다.

3) 1,330,235,620원 = 505,009,069원 + 520,000,000원 + 150,000,000원 + 70,000,000원 + 30,707,973원 + 45,914,803원 + 8,603,775원

4) 72.2% = 800,000,000원/1,107,896,000원

5) 56,934,102원 = 83,860,120원 - 26,926,018원

6) 20,305,330원 = 172,845,330원 - 152,540,000원

7) 45,914,803원 = 54,414,803원 - 8,500,000원

8) 60,908,712원 = 98,665,464원 - 37,756,752원

9) 피고는 2021. 6. 10.자 준비서면 제10쪽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였다.

10) 30,707,973원 = 60,908,712원 - 20,355,739원 - 9,845,000원

11) 389,922,189원 = 1,145,148,740원 - 520,000,000원 - 150,000,000원 - 45,914,803원 - 8,603,775원 - 30,707,973원